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수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, 산촌활성화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으로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(2019. 10. 31.)됨에 따라,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적용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, 산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지정요건과 사업내용을 정하며,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절차,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「국유림법」 적용 특례규정의 도입(안 제24조의2)

- 1)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을 다음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행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
 -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국유림의 용도와 상충되지 아니할 것
 -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·등록·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

나.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마련(안 제24조의3제1항)

1)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

-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 산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
- 임업인 교육, 산림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
- 산촌활성화 지원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

다.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추가(안 제24조의3제2항)

1)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함

- 귀산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
- 산촌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
- 지원센터 또는 지역공동체 지원기관 간 협력사업
- 지역내 산림일자리 발굴 및 중개사업

라.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·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마련
(안 제24조의3제3항 내지 제7항)

1)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

2) 산림청장은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산촌활성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할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

3)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
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4)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
위반행위	근거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7조의3 제4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27조의3 제4항제2호	시정 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다.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	법 제27조의3 제4항제3호	시정 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라. 법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 한 경우	법 제27조의3 제4항제4호	시정 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
마.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내용 수정(안 제25조의3)

2) 산촌개발사업을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촌활성화 및 산촌
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자구를 수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. 31. ~ 3. 31.)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국유림의 용도와 상충되지 아니할 것
2.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·등록·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

제24조의3(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요건 등) ①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.)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산촌 정착 및 산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
2. 임업인 교육, 산림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

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

3. 산촌활성화 지원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

②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귀산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

2. 산촌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

3. 지원센터 또는 지역공동체 지원기관 간 협력사업

4. 지역내 산림일자리 발굴 및 중개사업

③법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
2. 사업계획서

3. 전문인력 보유현황

4. 시설 명세서

5. 관련업무 수행실적

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⑤산림청장은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

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법 제27조의3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제25조의3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산촌진흥특화사업 등 산촌활성화를 위한 지원

13. 귀산촌인 등의 산촌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지정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(제24조의3제7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다음 1) 및 2)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
- 2) 산촌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7조의3 제4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27조의3 제4항제2호	시정 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다.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	법 제27조의3 제4항제3호	시정 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라. 법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27조의3 제4항제4호	시정 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4조의2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국유림의 용도와 상충되지 아니할 것</u> <u>2.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·등록·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</u>
<u><신 설></u>	<u>제24조의3(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요건 등) ①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.)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/u> <u>1.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산촌 정착 및 산촌 활성화를</u>

위한 지원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

2. 임업인 교육, 산림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

3. 산촌활성화 지원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

②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귀산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

2. 산촌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

3. 지원센터 또는 지역공동체 지원기관 간 협력사업

4. 지역내 산림일자리 발굴 및 중개사업

③법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

	<u>운영규정</u> <u>2. 사업계획서</u> <u>3. 전문인력 보유현황</u> <u>4. 시설 명세서</u> <u>5. 관련업무 수행실적</u> <u>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⑤산림청장은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u> <u>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⑦법 제27조의3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u>
제25조의3(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)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	제25조의3(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) ----- ----- -----

다. 1. ~ 11. (생 략) <u>12. 산촌개발사업 및 산촌주민</u> <u>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</u> <u>13. 임업인 등의 산촌정착 지원</u> 14. (생 략)	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산촌진흥특화사업 등 산촌</u> <u>활성화를 위한 지원</u> <u>13. 귀산촌인 등의 산촌 정착을</u> <u>위한 교육훈련</u> 14.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1815